

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요건(제10조 관련)

구 분	지정요건
1. 시설	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 가.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사무실 나.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
2. 인력	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. 농산물 유통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. 홍보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. 경영·컨설팅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3. 장비	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추어 가. 컴퓨터, 출력기기 등 정보 수집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장비 나. 음향, 영상기기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